



기본 환기 3원칙!



1일 최소 3회(10분 이상) 창문 열어 환기하기
*밀집도가 높은 공간이라면 더 자주 환기를 해주세요



맞풍풍이 일어나도록 문과 창문 동시에 여러 개 열기
*맞풍풍을 유도해 신선한 공기가 실내에 들어오게 하고 창문을 넓게 열기 어려울 경우 지속적인 환기를 시도합니다



냉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냉방 중에 환기하지 않으면 바이러스 재순환되면서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절기에 에어컨 가동 시 3원칙!



에어컨 가동 시 최소 2시간마다 1회(10분 이상) 환기하기
*밀집도가 높고 비닐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더 잦은 환기 필요



풍향은 사람이 없는 방향 천장 또는 벽으로 풍량은 가능한 약하게 설정하기



대중교통, 공동이용 승합차 운영 시 창문을 지속적으로 조금 열어두기
*차량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

창문 환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환기는 여러 개의 창문을 열어 맞풍풍 시키는 것이 좋지만 창문이 없는 지하 등에서는 다음을 지켜주세요!

- ❑ 비밀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강의, 노래 등)을 자제합니다
- ❑ 머무는 동안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 방문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합니다
- ❑ 환기설비가 없는 경우 주방 후드나 욕실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환기합니다
이 때, 선풍기를 활용하여 정체된 공기가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여 환기를 촉진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자에 대한 노출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름철 나와 우리를 위한 올바른 환기방법을 기억하세요!

기본 환기 3원칙
에어컨 가동 시 3원칙

*노출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면 감염위험이 2.2배 증가되고 6시간으로 늘어난다면 3.4배 증가합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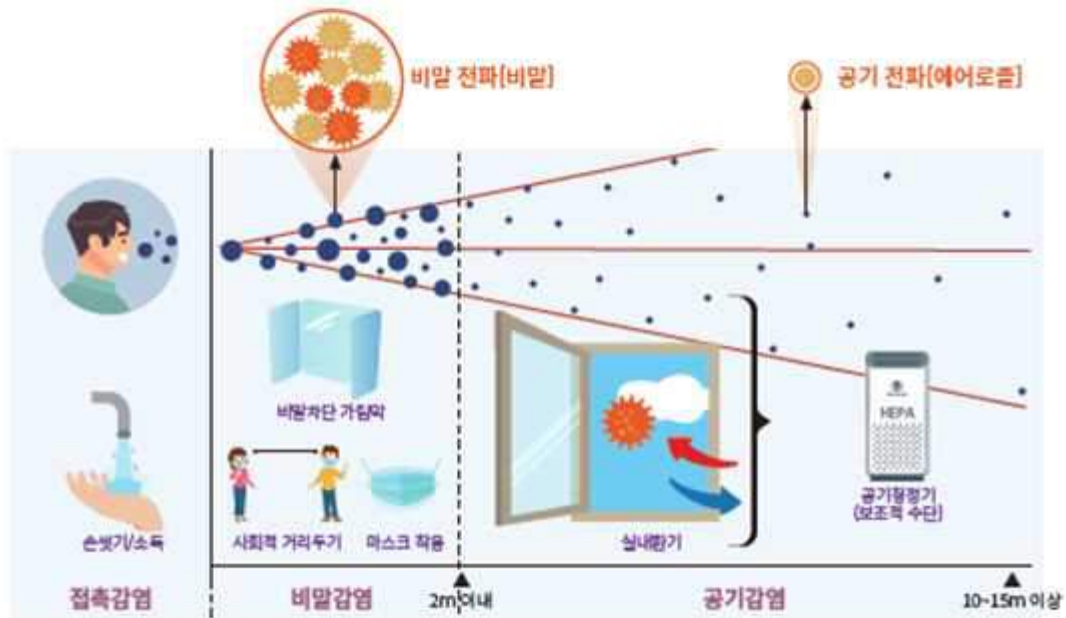


코로나19 바이러스 비말입자 확산특성과 예방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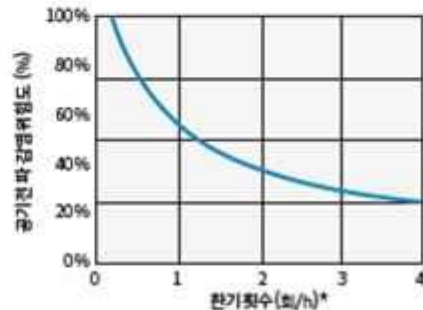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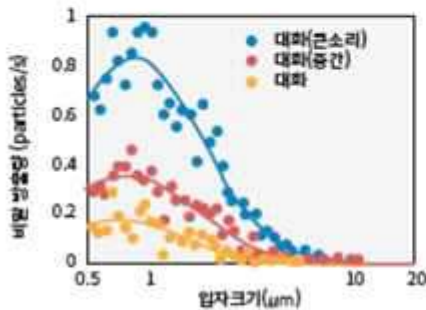
| 비말입자 크기별 특성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생존시간 |

- 5 μ m 이상의 비말은 대부분 1~2m에서 침강하나, 5 μ m이하의 에어로졸은 공기중 장시간 부유하여 10m 이상 확산가능
- 코로나19는 공기중 3시간, 스테인레스에서 2일간 생존가능(출처: NEJM, 2020)
 - 접촉 및 비말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이 유효한 수단
 - 건물내 집단감염 및 에어로졸에 의한 공기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가 필수적 수단



| 활동량에 따른 비말방출량 및 환기에 의한 공기전파 감염위험도 변화 |

- 활동량에 따라 호흡량(바이러스 배출량)이 증가하므로, 체육시설 및 카페 등과 같이 호흡량이 많은 시설은 공기전파 감염위험도가 높음
- 환기량*(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이 커질수록 공기전파 감염위험도가 낮아지며, 10분 내외의 자연환기시 (외부환경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3회 환기횟수 확보) 오염물질 농도 및 공기전파 감염위험도 1/3로 감소



*환기량은 외부공기가 실내에 유입·유출되는 양으로, 환기횟수 1회/시는 1시간에 실내체적 만큼 유입·유출되는 환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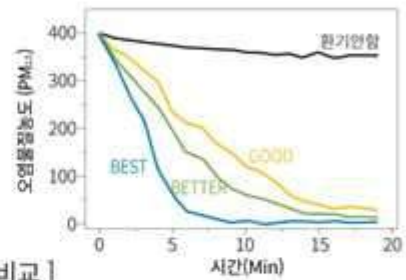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숨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2

|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 개방 및 냉난방기 가동중에도 자연환기 |

- 하루에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실시하고, 맞통풍을 고려하여 전후면 창문 및 출입문 개방



[자연환기 방식별 환기효과 비교]

| 중복지 형태의 건물(학원 등)에서는 유해물질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은 항상 닫은조건을 유지하고, 자연환기는 동시에 실시 |

- 출입문 상시 개방시 다른 공간으로 유해물질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문은 항상 닫은 조건을 유지하되, 자연환기시 모든 실에서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개방하여 환기



[학원 수업중 자연환기 방법]



[학원 쉬는시간 자연환기 방법]

| 환기설비가 없는 건물에서 선풍기 등을 활용한 환기량 증대방법 |



선풍기 또는서큘레이터로
실내 유해물질 외부로 배출

[창문이 1개인 경우 환기방법]



선풍기 또는서큘레이터로
실내 유해물질 외부로 배출

[창문이 2개인 경우 환기방법]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건물 유형별 환기가이드라인

3

| 코로나19 대응 환기가이드라인 일반원칙 |

-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활용하여 실내공간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등 실내유해물질 제거
 - 창문 및 출입문을 개방하고, 선풍기 및 환기설비 등으로 환기량 극대화
 - 공기청정기 활용시 유해물질 제거에 보조적인 도움



| 건물 유형별 코로나19 대응 환기가이드라인 기본원칙 |

- 환기설비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하고(내부순환모드 지양),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는 자연환기를 수시로 시행
- 건물내 중간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 배기팬 상시가동 및 위생배관 점검

건축물 및 환기설비 유형	환기가이드라인 기본원칙
 [사무소, 쇼핑몰, 병원 등]	 환기시스템 가동 확인  외기도입 극대화  사용전 유해물질 비출  내부순환 금식  화장실팬 상시 가동
 [소규모 점포]	 자연 환기(수시)  환기시스템 가동  화장실팬 상시 가동  위생배관 불수 확인
 [다중이용시설]	 자연 환기(상시)  기계설비활용 환기당 중대  환기시스템 가동  화장실팬 상시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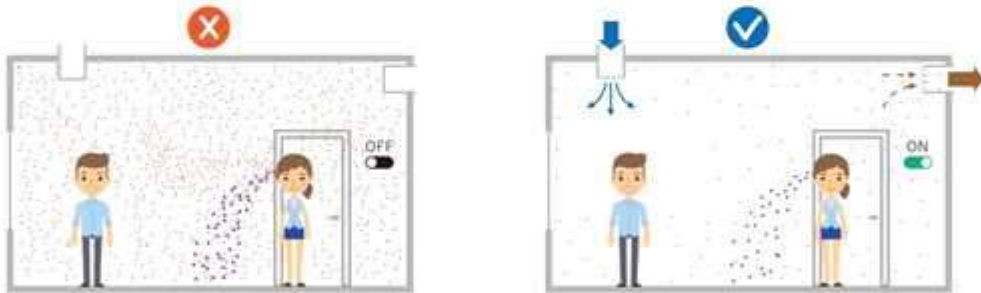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숨겨진 환기 가이드라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 다중이용시설 기계환기

4

| (내부순환모드 지양)외기도입량 100% 및 전배기 방식의 기계환기 상시가동 권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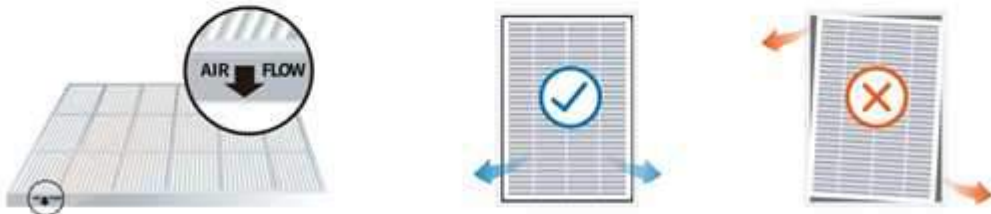
- 재실시간이 길고, 다수가 이용하는 병원, 카페, 콜센터 등에서는 환기설비를 상시 가동하여,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 제거



- 내부순환모드 지양(환기설비 외기도입량 최대화)

구분	내부순환모드	혼합모드	전외기 급기 / 전배기 모드
시스템 구성도			
취송구농도 측정사례			

- 고성능필터를 사용하고, 필터와 카트리지가 사이에서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에 유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습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서의 환기방법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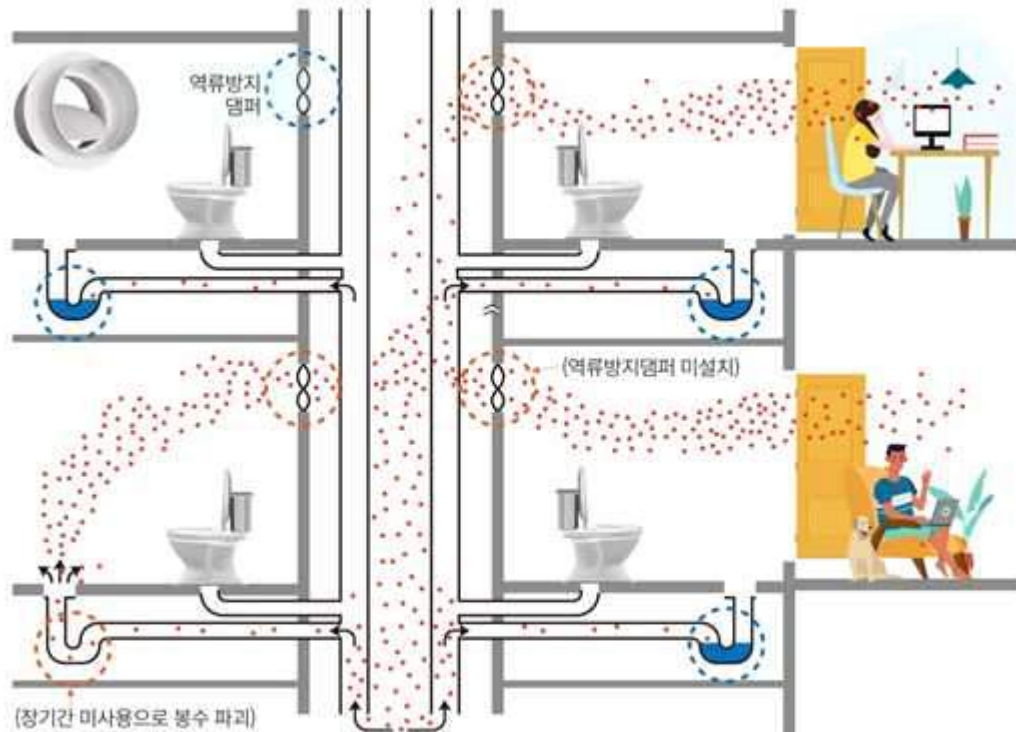
| 실내공간에서 음압형성시 화장실 배관, 환기구로 유해물질 유입가능 |

- 연돌현상이나 조리 중 레인지후드 가동 등으로 실내공간에 음압이 형성되어 오염물질 유입가능
-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배기팬 설치 및 레인지후드가동시 자연환기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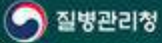


|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서 층간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설비점검 |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를 유지하고, 배기팬은 역류방지댐퍼가 있는 제품 설치
- 사무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배기팬은 상시 가동
- 화장실 설비배관내 통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설 점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습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질병관리청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한

2022. 4. 26.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수칙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수칙3**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수칙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 수칙6**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2022. 9. 30.

 질병관리청

- 9월 26일(월)부터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개인의 **자율적 실천**에 기반한
실외 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합니다.

1/5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과태료 부과’ 규제만 없어졌을 뿐,
실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 착용,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코로나19 주요 방역조치로써
마스크 착용 권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각종 호흡기 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시고,
30초 비누로 손 씻기 등

일상 방역의 생활화에
동참해주세요.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제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 (기타 권고)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합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는 실외에서도 착용 적극 권고
 - (관리 의무)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자·운영자는 해당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밀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가능
 -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상황**

예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
속

동 지침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집단방역 수칙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 등의 방역관리자가 코로나19의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실시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소모임) 등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제4-1판)

2022. 5. 13.



충청방역대책본부

목 차

I. 개 요

- 1. 목적 및 기본원칙 1
- 2.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 1

II. 다중이용시설 · 사업장 방역관리자 업무

- 1. 위험도 평가 및 지침마련 단계 2
- 2. 방역지침 실행 단계 3
- 3. 방역지침 준수 점검 단계 6

▷ 서 식 ◁

- 1. 다중이용시설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예시) 10
- 2.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예시) 11
- 3.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위험도 자가점검표(예시) 13
- 4.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예시) 14
- 5. 사업장 방역 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15
- 6. 소독 실시 대장 양식(예시) 17
- 7. 환기 실시 대장 양식(예시) 18
- 8. 직원 건강 모니터링 기록양식(예시) 19
- 9.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자 방역 점검표(예시) 20

▷ 부 록 ◁

- 1. 자주 묻는 질문 (FAQ) 24
- 2.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소독하는 방법(환자발생시) 26

I 개요

1 목적 및 기본원칙

- 사업장,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동호회(소모임)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

※ 관련 법적 근거 및 조치사항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 제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방역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
- 시설·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위험도를 평가**(시설, 인적측면)하고, 시설·사업장별 **맞춤형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실천이행 후 점검 실시
 - * 동호회 등 소모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임 전, 중, 후의 역할 수행

2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

- 모든 사업장(1인 이상 근무)·시설 등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자(전담조직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는 것을 권고**
 - * 규모가 큰 경우, 업체 내 부서별, 사업장별로 지정 가능

□ (주요 역할)

- ① **관련기관(중앙방역대책본부, 고용노동부 등)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지침의 변경사항을 항상 숙지**하고, 사업장·시설의 밀폐도, 밀집도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및 사업장·시설 특성에 따른 세부 방역관리 지침 마련

* <서식 3>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 참조

- ② 방역지침에 따라 시설·직원·이용자 관련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수행
- ③ 직원에게 방역지침을 주기적으로 교육, 이용자에게는 안내하고 관련 내용 게시 등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수행
- ④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개선방안 예시 등 참고하여 사업장·시설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
 - * 사업장·시설 책임자가 방역관리자인 경우, 책임자가 개선방안 마련·실행
- ⑤ 해당시설에서 코로나19 증상(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시, 신속하게 코로나 19 검사·진료를 받도록 안내
 - 감염취약시설에서 유증상자 추가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
 - *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방안 마련 및 지역보건소 담당자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II 다중이용시설 · 사업장 방역관리자 업무

1 위험도 평가 및 지침마련 단계

- 방역관리자는 시설·직원·이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평가 준비
- (시설) 지상 또는 지하 등 시설의 위치, 창문과 출입구를 통한 환기(맞통풍) 가능 여부, 책상 또는 테이블 등의 간격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배치 등
- (이용자) 이용자 1인당 평균 체류시간, 이용자의 규모 등
- (직원) 직원의 수, 업무 추진방식,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 방역관리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사업장의 위험도 평가 실시
- 식당, 영화관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의 방역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서식 1> 모든 사업장은 직원의 방역관리를 정도를 평가하는 <서식 3>, <서식 4> 활용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 * <서식 1> 다중이용시설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 <서식 3>,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 <서식 4>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

□ 방역관리자 지침 마련 단계

① 위험도 평가 후, 위험도가 중간이거나 높은 항목은 <서식 2>, <서식 5>를 고려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방역관리자 지침을 마련**

* <서식 2>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서식 5>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② (시설) 소독 방법 및 주기, 환기방법 및 주기, 물품관리 및 자원관리 방안 등

③ (이용자) 이용자 입장시 확인할 사항(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객 밀집도, 거리두기 가능여부 등),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강구(테이블 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비대면 주문·접수), 안내게시물 부착 등

④ (직원) 코로나19 유증상직원의 출퇴근 관리,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소독제 비치 등 직원 보호, 코로나19 예방교육 등

※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밀폐된 환경인 경우, 자주 손 씻기,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또는 투명 격벽 설치, 유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등 지침강화 필요

2 방역지침 실행 단계

1. 시설 관리

□ 청소 및 소독

○ 사업장·다중이용시설 등을 수시로 청소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 1주일에 1회 이상 사업장 내 표면전체를 소독

- 준비된 소독제를 천(형걸 등)에 적신 후 손이 자주 닿는 곳(출입구 손잡이, 탁자, 공용pc, 스위치 등)을 닦고, 일정시간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는 방법으로 매일 1회 이상 소독*

* 접촉이 빈번한 공용사용 물품의 표면은 더 자주 소독 필요

**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접촉식 장치(스위치 등)는 비접촉식 장치로 변경

- 소독 시, 직원은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방수장갑, 앞치마, 장화 등 착용, 소독 후, 소독한 날짜, 범위 등 소독일지*를 작성

* <서식 6> 소독 실시 대장 양식 예시

2) 환기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환기
- 창문 등을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매일 3회 이상) 실시

* <서식 7> 환기 실시 대장 양식 예시

3) 물품 및 자원 관리

- 사업장·영업장 소독·위생 관련 물품 확인 및 준비
 - * 마스크, 비누, 손소독제, 종이타월, 화장지 등
- 출입구나 화장실 등 시설 곳곳에 손소독제 등 위생 관련 물품 비치

4) 안내문 부착

- 사업장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 부착
 - *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자료 등을 활용

□ 사업장의 흡연실, 구내식당, 탈의실, 휴게실 등 집중 관리 실시

- 사람 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공용 공간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 주기적 환기 및 표면 소독 등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

2. 이용자 관리

□ 입장 관리

- 마스크 착용, 가급적 최소시간 머무르기 등 안내문을 게시
- 이용자 간의 최소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
- 코로나19 증상(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이용자는 이용을 자제하도록 안내

- 입장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손위생 철저 및 머무는 시간 최소화

□ 이용자 안전 관리

- 이용객 간 **최소1m** 이상의 간격을 유지
 - 스티커로 간격표시, 대기줄 분리, 테이블 간격 유지 등의 방안을 활용
- 물리적인 **간격 확보가 어려운 경우**, 투명 칸막이 설치, 이용객 수 제한, 이용객 간 시간 간격 유지 등
- 손 소독제를 비치 또는 **화장실 외 영업장 내 세수대 설치**하여 이용객이 자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조치
- 이용객이 집중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고, 이용객의 입·퇴장, 이동이 분산되도록 유도

□ 예방수칙 게시·안내

- 이용자 대상으로 예방수칙(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안내

3. 직원 관리

□ 출·퇴근 관리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은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재택근무, 유급 휴가 등을 활용하여 유증상자의 근무를 가급적 최소화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직원 보호 및 교육

- 직원들이 손을 자주 씻을 수 있도록 곳곳에 손소독제 비치
- 이용자와 직원의 간격을 **최소1m** 이상 거리두기 유지
 - 환경에 따라 마스크 외 추가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추가 보호 방안 고려

-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接客 업무를 맡은 직원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교육
 - 손씻기, 기침·재채기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식사시간에는 식사시간 분리, 좌석 간 간격 두기 등 밀집도 조절 권고

예방 교육

- 코로나19 질병 정보, 개인 위생수칙·행동요령, 사회적 거리 두기 교육

3 방역지침 준수 점검 단계

점검 실시

- 방역관리자는 사업장·시설 내 방역지침 준수 등 방역활동을 점검·평가
- 시설 책임자는 직원 등과 함께 매월 1회* 이상 방역관리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 실시

* 평가횟수는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시설·사업장 등의 협의를 통해 결정

- 개선 필요사항은 조치하고, 책임자·방역관리자·직원은 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상호간 지지

서 식

서식 1

다중이용시설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예시)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 설 명 : _____

작 성 자 : _____

점검항목	점검결과 (세가지 중 해당에 V표시)					
	낮음(0점)		중간(1점)		높음(2점)	
(밀폐도) 외부 공기로 환기(자연환기, 기계환기)가 원활한가?	창문·출입문 통해 상시 환기 가능		매일 3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가능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불가 (지하에 위치 등)	
(밀집도) 이용자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이용자간 항상 2m 유지 가능		이용자간 1m이상 유지 가능 *테이블간, 좌석간		이용자간 1m거리 유지 불가 *테이블간, 좌석간	
(지속도) 이용자의 평균 체류시간은?	30분 이내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활동도) 침방울(비말) 발생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정도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의 침방울 발생		적극적 침방울발생 (노래, 춤, 격한 운동, 응원등)	
(관리도) 방역 수칙 준수정도는? (아래 항목에 V표시)	5개 이상		4개		0~3개	
준수	미준수	방역 수칙 항목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였는가?				
		손소독제 비치하였는가?				
		직원과 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였는가?				
		주기적인 환기(자연환기, 기계환기)를 실시하였는가?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물품의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였는가?				
		(식당·카페)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중 한가지 이상 준수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개선 및 대안						
위험도 종합 평가			() 점			

※ 위험도 종합 평가: 낮음(4점 이하), 중간(5~7점), 높음(8점 이상)
다만, 위험도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

서식 2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점검항목	개선안 (예시)
<p>(밀폐도)</p> <p>공간 내 환기는 가능한가? (공기 중 침방울 농도 감소)</p>	<p>※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기계환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야외시설 이용(특히, 침방울 발생 행위시) 유도 및 우선배치 ② 상시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 문을 개방하여 상시 환기 ③ 상시 자연환기가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자주 자연환기 및 외부 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기계환기
<p>(밀집도)</p> <p>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한가? (사람 간 거리 확보)</p>	<p>※ 시설 면적을 고려한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게시·안내 및 사람 간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안내문 부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대면 접수(무인 주문·계산기), 대면 접수·계산 시 물리적 장벽(투명 칸막이 등) 설치 ② 테이블의 최소 1m 이상으로 배정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③ 대기하는 줄, 흡연실 등 밀접 접촉이 가능한 공간에 1m 간격을 표시, 한 방향으로 이동 안내 ④ 바닥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⑤ 그 외 테이블 칸막이 설치 등
<p>(지속도)</p> <p>이용자의 평균 체류시간은 어떠한가? (이용자의 체류시간 최소화)</p>	<p>※ 이용 절차 안내문 부착(신속한 이용 유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전 예약제 운영 ②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포장, 배달·포장 등 활용 ③ 시간대별 입·퇴장 제한하거나, 입장 후 1시간 알림 등
<p>(활동도)</p> <p>이용자·직원의 침방울 발생 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행위 줄이기)</p>	<p>※ 침방울 발생 및 전파 가능한 행위 자제 ((혼자, 함께)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응원, 춤추기, 격한 운동, 공용 그릇 사용 등의 식사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침예절(기침 또는 재채기 시 휴지 혹은 옷소매 사용 후 손소독) 안내 ② 식사할 때 공용 그릇 사용하지 않고 개별 식기와 집기 사용
<p>(관리도)</p>	

점검항목	개선안 (예시)
방역 수칙 준수 정도는?	
방역관리자 지정 및 활동 (관리의 효율성 증대)	※ 지정된 방역관리자가 위험도를 평가 및 개선활동, 이용자·직원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손위생 등 방역 수칙 준수 및 시설 내 동시 이용가능인원 게시 등 관리 ①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문 부착·착용안내 ② 출입구, 개별 방(실) 마다 동시 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③ 이용자 대면 시, 손소독제 제공 및 손소독 안내 * 예시 : (음식점) 메뉴판 제공시, 출입 시 손소독제 제공하여 손소독 권고, (택시)탑승자 탑승 시 손소독제 제공하여 손소독 권고 ④ 화장실에 비누, 손세정제 등 비치
직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으로 침방울 튼 차단)	※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및 기본 수칙 교육, 안내문 부착 - 코로나19는 침방울 튼으로 인하여 전염되는 특징이 있음을 부착 ①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안내·착용 독려
시설의 주기적 환기 (환기를 통한 공기 중 방울 농도 감소)	※ 시설의 주기적 환기 및 환기대장 관리 ① 가능한 경우 상시 자연환기 하고, 불가능한 경우 적어도 매일 3회(회당 10분) 이상 자연환기 ② 기계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부 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연환기를 병행 ③ 냉난방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시간 마다 1회(10분) 이상으로 더욱 자주 자연환기 ④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곳은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내부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환기
자주 손이 닿는 물체 표면 주기적 환경 소독 (환경 소독을 통한 감염전파 차단)	※ 주기적 소독 및 소독대장 관리 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 (손이 자주 닿는 곳) 문손잡이, 메뉴판, 탁자, 의자, 리모컨, 화장실 세면대 손잡이, 공용 물건, 무인 계산기 표면, 승강기 버튼, 계단 손잡이 등 ② 소독하지 않은 물건은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 분리하여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서식 3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

※ <사업장 방역 위험도 자가점검표>는 시설·직원·이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는 방역관리 점검을 매일 실시 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점검표는 예시, 사업장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설명 : _____
 방역관리자 : _____

점검항목	점검결과 (세가지 중 해당에 V표시)					
	낮음(0점)		중간(1점)		높음(2점)	
(밀폐도) 외부 공기로 환기(자연환기, 기계환기)가 원활한가?	창문 출입문 통해 상시 환기 가능		매일 3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가능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불가 (지하에 위치, 냉장시설 가동 (ex.육공업체) 등)	
(밀집도) 직원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사업장·흡연실·휴게실 등)	이용자간 항상 2m유지 가능		이용자간 1m이상 유지 가능		이용자간 1m거리 유지 불가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 이용자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좌석간 2m유지 또는 칸막이설치				좌석간 1m 유지 불가	
(군집도) 한 공간(사무실 등을) 동시 사용하는 직원 규모는?	10명 미만		10명이상 100명미만		100명이상	
(활동도) 침방울(비말) 발생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정도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의 침방울 발생(일반 사무공간)		적극적 침방울 발생(여론조사 기관, 콜센터 등)	
(관리체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였는가? (유증상자 확진자발생시 대응체계 등 포함)	관리인력등을 구성하여 방역관리체계를 작동할 수 있음				관리인력등을 구성하여 방역관리체계를 작동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개선 및 참고 사항						
위험도 종합 평가			() 점			

※ 위험도 종합 평가: 낮음(6점 이하), 중간(7~9점), 높음(10 이상)

서식 4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예시)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 설 명 : _____

방역관리자 : _____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결과 (해당에 V표시)	
	예	아니오
① 직원 및 방문자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는가? (사업장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② 근무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가?		
③ 손위생 시설(세수대와 비누) 또는 손소독제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④ 매일 3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상시 기계환기 가동을 하는가?		
⑤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물품의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가?		
(해당사업장만) 보호용구(작업복, 안전모, 고글, 안면보호구, 장갑, 신발 등)를 개인별로 사용하거나 공용사용시 매 사용시마다 소독하는가?		
<input type="checkbox"/> 개선 및 참고 사항		

서식 5

사업장 방역 관리 위험도 개선방법(예시)

점검항목	개선안 (예시)
(밀폐도) 외부 공기로 환기(자연환기, 기계환기)가 원활한가? (공기 중 침방울 농도 감소)	※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①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작업장,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출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등)은 공간면적, 인원 등을 고려하여 매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주기적 환기를 위한 환기 담당자 지정 등 방법 활용
(밀집도) 직원 간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가? (사람 간 거리 확보)	※ 직원 간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안내문 부착 ① 책상, 작업대, 의자의 간격 1m 이상으로 배정 또는 좌석 칸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 불가능한 경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거리 유지 배치, 작업대를 같은 방향으로 조정하거나 물리적 장벽(책상 칸막이 등) 활용 등 ③ 흡연실, 탈의실, 휴게 공간, 구내식당의 대기 줄 등 밀접 접촉이 가능한 공용 공간에서는 1m 간격을 표시 하고, 한 방향으로 이동 안내 ④ 회의·보고 전·후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 ⑤ 구내식당의 좌석은 1m 유지 가능하도록 배치 또는 칸막이 설치
(군집도) 한 공간(사무실 등)을 동시 사용하는 직원 규모는? (한 공간 내 동시 근무 인원 최소화)	※ 직원 분산 등을 위해 근무 형태 안내 및 유도 ①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휴가제도 마련 및 활성화 ②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3분의1, 2분의1 등 사회적 거리 유지 가능한 비율) 근무(그 외 재택근무 등 활용) ③ 교대근무 시, 교대 조는 시간차를 두고 업무 공간 사용 ④ 사업장에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활동도) 침방울 발생 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행위 줄이기)	※ 비말 발생 및 전파 가능한 행위 자제, 기침예절(기침 또는 재채기 시 휴지 혹은 옷소매 사용 후 손소독) 안내 ① 식사, 휴게 공간에서 개별용기 사용 및 음식 공유 자제 ② 대면 접촉 감소를 위해 영상회의, 서면회의, 전화회의 등 활용, 불가피한 경우 참석인원 및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③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업무 직원은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④ 밀폐된 공간 내, 사람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대화 자제 등 침방울 발생 행위 자제 유도
(관리체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였는가? (사업장 내 방역관리 위험도를 평가하고, 맞춤형 방역지침 마련)	※ 지정된 방역관리자가 위험도를 평가 및 개선활동, 직원들의 방역 수칙 준수 등 관리 ①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장·시설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및 시설 특성에 따른 세부 방역관리 지침 마련 ② 직원에게 방역지침을 주기적으로 교육, 이용자에게는 안내하고 관련 내용 게시 등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수행
직원의 마스크 착용 (사업장 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및 기본 수칙 교육, 안내문 부착 (사업장 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점검항목	개선안 (예시)
(마스크 착용으로 침방울 튼 차단)	<p>- 코로나19는 침방울 튼으로 인하여 전염되는 특징이 있음을 부착</p> <p>①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 (특히, 계속 말을 하는 업무 직원은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p>
<p>근무중 유증상자·확진자발생시 대응</p> <p>(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받도록 안내)</p>	<p>※ 직원중 발열, 기침 등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퇴근조치 및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p>
<p>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 물품 매일 1회 이상 소독</p> <p>(환경 소독을 통한 감염전파 차단)</p>	<p>※ 소독 및 방역 수칙 교육 및 안내</p> <p>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실시</p> <p>* (손이 자주 닿는 곳) 문손잡이, 메뉴판, 탁자, 의자, 리모컨, 화장실 세면대 손잡이, 공용 물건, 무인 계산기 표면, 승강기 버튼, 계단 손잡이 등</p> <p>② 소독하지 않은 물건은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 분리하여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p>
<p>손 위생 시설 비치</p> <p>(손 위생 통한 감염전파 차단)</p>	<p>※ 손씻기 안내문 부착(출입문, 이용 공간 등)</p> <p>① 사업장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 안내문 부착하여 손 소독 유도</p> <p>② 화장실에 비누, 손세정제 등 비치</p>
<p>(해당사업장) 보호용구를 개별적 사용 또는 사용 전·후 소독</p> <p>(보호용구를 통한 감염 전파 예방)</p>	<p>※ 개인보호용구 개별 사용 또는 공용사용시 사용 전·후 소독 철저</p> <p>① 개인방역수칙과 관련된 개인보호용구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안내(안내문 부착, 안내 방송 등)</p>

서식 6**소독 실시 대장 양식¹⁾(예시)**

연번	일시	장소	약품류	소독방법	담당자 확인	관리자 확인
1	6.25	탈의실		표면소독		

※ 동 기록양식은 예시로서, 시설등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시행 할 수 있음

1)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제 3-4판)」참조

서식 7

환기 실시 대장 양식²⁾(예시)

연번	일시	시간	장소	비고	담당자 확인	관리자 확인
1	6.25	09:00	회의실 (창문, 출입문)	상시환기 (10분이상)		
		11:00				
2						

※ 동 기록양식은 예시로서, 시설등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시행 할 수 있음

2)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제 3-4판)」참조

서식 8

직원 건강 모니터링 기록양식(예시)

연번	이름	소속	날짜	일시	체온(℃) ¹⁾	호흡기 증상 ²⁾					특이사항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권태감	⑤ 기타	
1	홍길동	OO 기업	6.25	09:00	36.5	-	-	-	✓	설사	
				14:00							
2											
3											

- 1) 직원의 증상발생 여부 확인위해 체온측정
- 2) 코로나19 증상*은 방문객이 직접 기록
 -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서식 9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자 방역 점검표(예시)

점검 내용 (√표로 체크)		확인
시설명 :		
방역 관리	시설 위험도 평가 후 시설 별 맞춤형 방역관리 지침을 마련하였는가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방역수칙 교육 하였는가	√
기본 방역 수칙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받도록 안내하였는가	√
	코로나19 확진 시, 방역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안내하였는가	
	예방수칙 홍보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배치 하였는가,	
	환기 대장 및 소독 대장을 배치 하였는가	
	동선이 많이 겹치는 장소별 손소독제 배치를 했는가	
	마스크 상시 착용하도록 안내하였는가	
	음식섭취 전 손위생 철저히, 음식 나눔 자제하도록 안내 및 준수하도록 관리하였는가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장소에선 비말이 많이 발생 할수 있는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 및 준수하도록 관리하였는가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자제 조치 권고하였는가	
소독	소독 전 소독장비가 준비되어 있는가, 환경부에서 승인된 소독제품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하였는가, 소독 후 소독 대장 기록하였는가	
	일 1회 이상 개인별 사무공간(책상 등)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였는가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하도록 안내 하였는가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에서는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가 증가 되어야 함을 안내하였는가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환기하도록 안내하였는가(맞통풍)	
	조식·중식·석식 등 배식 시간 전후 환기필요(환기시간 게시 권고)하다고 권고하였는가	

※ 동 자가점검표는 예시로서, 시설등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시행 할 수 있음

**부
임**

Q1.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종교모임 같은 소모임을 할 때에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 시설·사업장 뿐만 아니라 종교모임, 취미모임 등 사적 모임에도 방역관리자가 지정을 권고합니다.
-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의 전파로부터 시설·사업장·동호회 모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Q2. 방역관리자는 누구를 지정하나요? 사업장·시설 책임자(사업주, 모임의 장 등)가 방역관리자가 되어야 하나요?

- 방역관리자는 구성원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 시설·사업장·동호회 모임의 규모에 따라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적정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구성원은 시설·사업장·동호회의 방역 관리를 위한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Q3. 위험도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처벌이나 규제를 받게 되나요?

- 위험도 평가점수가 높다고 처벌이나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위험도 평가는 시설·사업장 스스로 자가 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방역 관리 상태(밀폐, 밀집, 방역 수칙 준수 정도 등)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Q4. 위험도 평가는 언제 진행 하는 것이 좋은가요?

- 위험도 자가 평가는 시설·사업장·동호회 모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평가 주기 등을 결정하여 수행하면 됩니다.
 - 다만, 단순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따른 개선 조치를 수행 할 것을 권고합니다.

Q5.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위험도 평가를 해야 하나요?

- 위험도 평가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가장 혼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시간을 기준으로 관리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 적극적 방역관리 수행을 통하여 코로나19의 감염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6. 자연환기가 불가 한 경우 공기 청정기로 대체 할 수 있나요?

- 공기청정기와 관계없이 주기적 환기(하루 3회 이상)를 권합니다.
 - 환기를 통해 코로나 19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Q7. 시설 소독 시 어떤 소독제를 사용해야 하나요?

- 환경부 승인 또는 신고 된 소독제를 사용하며,
 - 소독제 사용 전에는 반드시 소독제 라벨에 쓰여 있는 용량과 용법 등 권장사항을 읽고, 사용 시 준수해야 합니다.

Q9. 방역지침만 제대로 이행하면 안전한가요?

- 코로나19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으나, 책임자·종사자(직원)·이용자·모임구성원 등 모두의 방역지침을 준수 노력을 통해 감염 전파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보건용 마스크 및 장화 등을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3.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 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한다.
4.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5.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6.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표면을 닦는다.
 -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7.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에 세제나 소독제를 넣고 온수세탁한다.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세탁이 어려운 매트리스, 카펫 등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9.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10. 일회용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손을 씻는다 → 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일회용 가운, 장갑과 마스크는 각각 벗을 때마다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13. 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15. 소독 후 14일 이내에 소독을 실시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즉시 받도록 안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